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거래 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 방지를 위해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수요·공급업체 간 상호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설립되었으며, 고의적 불순물 혼입 행위 등의 개선유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근절 등의 활동을 통해 철스크랩의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철스크랩 업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서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고는 철스크랩의 품질 향상과 자율적 시장정화 그리고 유통질서 확립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2022. 1.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1. 신고기준

다음의 신고기준들 중 어느 한라도 해당되는 행위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① 차량1대가 KS D 2101의 「표6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 기준의 3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모든 철스크랩 거래가 이에 해당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단위:%)	생철	모터블록	중량	경량	선반	슈레디드	길로틴	압축
KSD2101에 의한 불순물 기준(차대별)	0.5	15	10	20	20	10	20	20
고의적 불순물 신고기준 (KSD2101 불순물 기준의 3배)	15	45	30	60	60	30	60	60

- ② 상차지에서 불순물을 고의적으로 혼입하는 행위
③ 철스크랩 고의 혼입을 목적으로 철스크랩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④ 철스크랩 거래 시 계량부정, 서류부정, 적재함 부정 등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경우는 불순물 고의 혼입의 경우는 아니나 신고대상에 포함

2. 신고방법

신고센터에서는 우편이나 e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적정신고(신고양식+사진 또는 동영상)만 접수하며 전화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가. 신고센터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동관 15층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02-559-3574)

나. 신고센터 메일 : hyeonchol.lee@ekosa.or.kr

다. 신고양식 다운로드 :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www.steelscrap.or.kr)

3. 고의적 불순물 혼입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 업체에 대한 조치 : “주의”, “경고”, “공표”, “사법기관 고발”

4.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포상금 지급

- 적정신고 시 조치결과와 관계 없이 10만원 지급
- “주의” 확정 시 50만원 지급, “경고” 확정 시 100만원 지급, “공표” 확정 시 150만원 지급, “고발” 확정 시 200만원 지급